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황우진
전화 031-5182-4290 / 팩스 031-5182-4555

보도자료
2024. 6. 18.(화)

前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·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

- 관내 4개 업체에서 현금 3억원 수수, 외제차 리스료·개인사무실 월세·수행기사 급여 대납, 전원주택 무상이용 등 총 5억3,700만원 불법수수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수원지검 형사6부(부장검사 서현욱)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4개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합계 5억3,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(뇌물),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.

- 공소사실의 요지는

- ① 민주당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재직시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B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, 전원주택을 선거캠프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고,
- ② 경기도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,300만원을 수수하고,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대납 등 명목으로 뇌물 7,000만원, 정치자금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했으며,
- ③ 경기도에서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자신의 사적 수행기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3,700만원 상당을 대납케 하고,
- ④ 쌍방울그룹 실사주 E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의 대가로 현금 3,000만원을 수수하고, 제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,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.

- 검찰은 A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공여한 B, C, D, E에 대해서도 뇌물공여,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.
- A의 범죄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으로, 검찰은 A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조치하였습니다.
-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 피고인

- A(60세, 前경기도 평화부지사, 前 (주)킨텍스 대표이사)
- B(72세, 경기도 관내 甲 건설업체 대표)
- C(55세, 경기도 관내 乙 전기공사업체 대표)
- D(58세, 경기도 관내 丙 아스콘·레미콘 업체 부회장)
- E(55세, 前 쌍방울그룹 회장)

2 공소사실 요지

① A - 특가법위반(뇌물), 뇌물수수, 정치자금법위반 등

- B로부터 정치자금 수수
 - '21. 7.~'22. 9. 경기도내 건설업체 대표 B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하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,000만원씩 총 3억원 수수
 - '21. 12. B에게 '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'고 요청하여 B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

● C로부터 정치자금 · 뇌물 수수

- ① '15. 10. C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 등으로 4,300만원 상당을 기부받고, ② '16. 9. C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, 보험료 합계 5,500만원 상당을 대납케 하고, ③ 평화부지사('18. 7. ~ '20. 1.) 및 (주)킨텍스 대표이사 ('20. 9. ~ '22. 9.) 재직시 개인사무실 2곳*의 월세, 관리비 등 명목으로 5,200만원 가량을 대납케 함

*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건물로, 같은 건물에 사)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도 있음

● D로부터 정치자금 · 뇌물 수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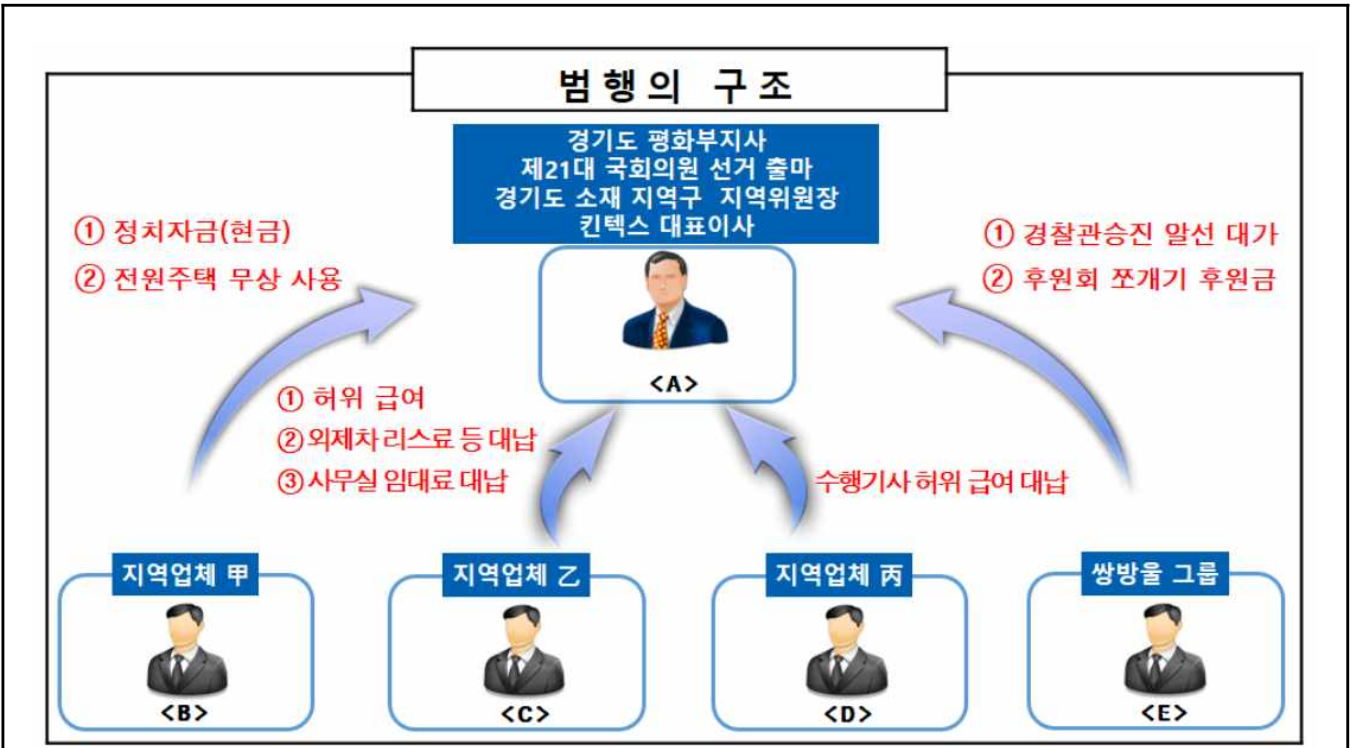
- 과거 국회의원 재직시('04. ~ '08) 수행비서였던 사람에게 범죄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, 그에게 계속 사적 수행기사 역할을 맡기기 위해 경기도 내 아스콘 업체 부회장으로서 사업상 편의를 원하던 D로 하여금 위 사적 수행기사를 위 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급여 등 명목으로 '18. 8. ~ '19. 11. 합계 약 3,700만원을 대납케 함

● E로부터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쪼개기 후원

- '19. 1. E로부터 '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'는 요청을 받고, 이후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E로부터 3,000만원 수수
- '20. 2.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E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하고, E는 2,000만원을 타인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기 후원

② B, C, D, E(공여자) - 뇌물공여, 정치자금법위반 등

- 위와 같이, ① B는 A에게 현금 3억원과 선거캠프로 사용할 전원주택을 제공, ② C는 A에게 외제차 리스료, 사무실 월세 등 1억5,000만원 상당 금품 지급, ③ D는 A에게 사적 수행기사 급여 3,700만원 상당 지급, ④ E는 A의 요청으로 2,000만원을 500만원씩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



3 수사 결과

검찰은 A를 상대로 다수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하려 하였으나,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출석을 거부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는바, 그동안 수집한 객관적 물적증거와 공여자 진술 등 다수 증거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기소하였음

① 다수 관내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지속적으로 수수

- A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쌍방울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약 6년간 경기도 내 다수 기업으로부터 온갖 구실로 불법적 자금을 지속적으로 수수하였음
 - ① 도내 레미콘업자 · 전기공사업자 · 건설업자, 기업 실사주 등 경기도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업체 대표들로부터,
 - ② 개인 수행기사 급여 대납, 차량 리스료 · 사무실 월세 대납, 허위 급여, 지역위원회 운영비, 선거캠프 장소 대여, 경찰관 승진 청탁 알선 대가, 쪼개기 고액 후원 등 온갖 구실로 불법자금을 수수하였음

- A가 7년('15. 11.~'22. 9.)에 걸쳐 수수한 금전 등 **재산상 이익 합계가 약 8억6,300만원**(위 4개 업체에서 5억3,700만원, 쌍방울그룹에서 3억2,600만원)에 이르러, 같은 기간 중 급여(경기도 평화부지사 18개월, (주)킨텍스 대표이사 24개월)로 받은 금액 합계 약 4억8,000만원을 훨씬 넘어섬

A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내역



② '대납(代納)' 방식의 불법자금수수

- A는 자신의 개인 수행비서 급여, 고급 외제차 리스료, 개인사무실 월세는 물론, **차량 보험료, 사무실 관리비**까지 공여자들로 하여금 **대납**케 하였음
- 지난 6. 7.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 사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, A는 다른 사적 수행비서의 급여도 E로 하여금 대납케 하는 등 **'대납'을 불법자금수수의 통로로 활용**해왔음
 - 위 판결에서 확인되듯이 A는 E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배우자,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사용하고, 심지어 가족여행에서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돈으로 대납받는 것을 당연시 해왔음
- A가 수수한 정치자금 일부는 당시 위원장으로 관리하던 경기도내 지역구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음

③ 범죄수익 철저히 박탈

- 부패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임
- 검찰은 A가 취득한 범죄수익(총 5억3,700만원)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하였음(전세보증금 약 3억원, 사적 수행비서에게 제공된 전세보증금 약 5억원)
-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범죄수익(총 3억2,600만원) 대부분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조치 한 바 있음(또 다른 전세보증금 약 3억원)

4 향후 계획

-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A의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